##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	2021.5.25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여의도동 48-1번지 업무시설 / 영등포구 여의도동 48-1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21-9-1 <b>심의결과</b> 조건부의결		

#### [심의 내용] 건축 + 경관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'조건부의결'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「건축법」제4조 및「경관법」제28조에 의한 건축·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,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〈 건축 분야 〉

#### □ 건축계획

- 공개공지는 이용자들의 편의성, 활용성, 소공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기존 계획안('21년 제7차 건축위원회 상정안)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의사 당대로 변에 선형으로 확보 바람.
- 대우트럼프월드2차아파트와 마주하는 남동측 입면(배면)계획은 빛 반사 방지 등을 고려한 색채, 재질, 녹화계획 등을 검토하기 바람.

#### □ 구조

- 실시설계 시 하중 전이보의 단면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 계획을 수립 하여 구조평면과 전이보 단면에 상세히 표기 바람.
- 매스(mass) 간 횡력을 전달하는 바닥이 무한강성을 가진 격벽구조 (diaphragm)로 보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보강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

#### □ 방재

- 피난용승강기 승강장, 특별피난계단 계단실과 부속실의 출입문에 대한 상시 닫힘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바람.
- 공사중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설계도서에 표기하기 바람.

- 계 속 -

2021.5.25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	2021.5.25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여의도동 48-1번지 업무시설 / 영등포구 여의도동 48-1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21-9-1	심의결과 조건부의결	

#### [심의 내용] 건축 + 경관

#### 〈 건축 분야 〉(계속)

#### □ 조경

- 공개공지 안내판은 보행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도측에 설치 바람.
- 공개공지는 가로휴게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퍼니처, 휴게시설 등 설치 검토 바람.
- 지상1층 후면 조경공간은 휴게시설을 확대하고 식재계획, 접근 동선계획을 재검토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바람.

#### □ 교통

- 차량 진입부에 주차정보시스템(PIS)을 설치하기 바람.
- 지상1층 램프전면 평탄부 5m는 유지하고 주차차단기는 올라오는 차량의 궤적을 고려하여 지하1층에 설치하기 바람.
- 용역원 휴게실 부분의 가각을 사선으로 계획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 바람.

### 〈 공통사항 〉

- 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.
  - 가. 녹색건축인증 : 그린2등급
  - 나.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: 1++등급
  - 다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
    - 11.40%[태양광(PV) 40.42kW. 연료전지 17kW]
- 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

-계 속-

2021.5.25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	2021.5.25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여의도동 48-1번지 업무시설 / 영등포구 여의도동 48-1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21-9-1	심의결과 조건부의결	

[심의 내용] 건축 + 경관

### 〈 공통사항 〉(계속)

- 3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 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.
- 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 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"불필요한 시설"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.
- 5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
  - 1) 대지면적 1,000m²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m² 이상의 건축물
 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'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적용
- 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21.5.25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